

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-212호

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안)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387호(2009.10.1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, 최종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627호(2024.12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 고시된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,
2. 사업시행자(조합)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,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(안)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3.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(안)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(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, 용산구청 7층 재정비사업과 ☎02-2199-7445)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2월 6일

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2026년 2월 6일 ~ 2026년 2월 24일(19일간)

나. 공람장소

- 1)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(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, 용산구청 7층)
- 2)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(서울시 용산구 장문로 14, 2층)
- 3) 서빙고동 주민센터(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279, 1층)

다.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내용

- 1) 정비사업의 명칭 :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2) 사업시행자의 성명 :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신상철
- 3)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용산구 장문로 14, 2층(☎02-749-8189)
- 4)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0개월
- 5)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 - 공동주택 56개동, 2,592세대(일반 2,202세대, 임대 390세대) 및 오피스텔 1개동
 - 지하6층/지상23층, 건폐율/용적률 30.96%/221.63%(이하 생략 : 관계도서 참조)

라. 관계도서 : 생략(공람장소에 비치)

마. 의견제출 방법 : 공람의견서를 작성 후 공람기간 내에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(공람기간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)
(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, 용산구청 7층 재정비사업과)

바. 본 공람 내용은 관련 법령, 관계 부서(기관) 협의나 사업 시행과정, 기타 행정절차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, 공람 내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되고 본 공고문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.